

## 2 개정조문

현 행	개 정 안
<p>제42조의2(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「자 동차등록령」 제22조제4항제4호 에 따른 등록 및 「건설기계관리 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42조의2(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「자 동차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 자동 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 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.</p>